㈜우리금융지주-우리벤처파트너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

(개인 거주자用)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소액주주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액주주가 아닌 개인 대주주(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지분율 2% 이상 혹은 시가총액기준 10억원 이상인 주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개인 소액주주 및 개인 대주주 모두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가액의 0.3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상세내용은 본문 참조).

[유의사항]

- 1.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3.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 바, 세무신고·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1-628-6480(우리벤처파트너스㈜ IR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I.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 가. ㈜우리금융지주(이하, "지주") 주식과 우리벤처파트너스㈜(이하, "벤처파트너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본건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이하 "대주주")는 2024 년 2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는 ①본인과 ②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그리고 ③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하여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 (1) 2022 년말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 (2) 2022 년말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 억원 이상인 경우
 - (*)2022 말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23 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대주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주주로 봅니다.
- 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총 양도가액은 주식교환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지주 주식수와 지주 주식의 본건 포괄적 교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곱한 금액에 단주대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 250 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대주주의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보유기간 구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	33%(지방소득세 3% 포함)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주식	과세표준 3 억원 이하 구간: 22% (지방소득세 2% 포함)
	과세표준 3 억원 초과 구간: 27.5% (지방소득세 2.5% 포함)

2. 증권거래세 과세

- 가. 본건 포괄적 교환 시 양도가액의 0.3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며, 이 때 주당 양도가액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의미합니다.
- 나.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4 년 2 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Ⅱ.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 가. 벤처파트너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도되는 주식에 대하여,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이하 "대주주")는 2024 년 2 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는 ①본인과 ②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그리고 ③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하여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1) 2022 년말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 (2) 2022 년말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 억원 이상인 경우
 - (*)2022 말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23 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대주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주주로 봅니다.

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주당 양도가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벤처파트너스로부터 지급받는 벤처파트너스 주식 1 주당 가액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2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대주주의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보유기간 구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	33%(지방소득세 3% 포함)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주식	과세표준 3 억원 이하 구간: 22% (지방소득세 2% 포함)
	과세표준 3 억원 초과 구간: 27.5% (지방소득세 2.5% 포함)

2. 증권거래세 과세

- 가. 벤처파트너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위 제 1 항 참조)의 0.3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 나. 금융투자업자에 개설된 고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본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2024 년 2 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